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맹본부 공급 물품 최저가 보장 등 가맹점사업자 권리 강화 등 >

■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549호)

2024.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맹본부 공급 물품의 최저가 보장	3
2. 가맹계약 갱신 거절 시 가맹본부의 입증책임 강화	8
3. 가맹계약 최소 기간 2년으로 규정	11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3. 11. 21.
- (3) 회 부 일 : 2023. 1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물품 및 용역 등의 공급에서 높은 독과점가격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점포를 임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임대 계약기간과 가맹사업 계약기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가맹계약 및 갱신 등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

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가맹본부 공급 물품의 최저가 보장

□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제공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u>

현행	개정안
4. ~ 6. (생략) ②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2조제1항제2호1) 및 시행령 [별표2] 2. 나.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는 무관하거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 등을 가맹본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³⁾

2023년 국정감사(2023.10.16.)에서는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싼 값에 살 수 있는 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해 본사가 과도한

1)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가맹점 10곳 중 6곳 “본사에서 필요없는 물품까지 사게 해” (조선비즈, 2022.12.4.) 등

이익을 가져가는 등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점에 대한 다수의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임.

통상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은 가맹본부의 필수·권장품목의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인데,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2023년도 가맹거래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사업자가 60.5%에 달하고 있으며,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사업자 직접 구입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이 79.5%로 조사되고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권장품목의 거래형태의 경우 주문생산, 자체생산, 일반공산품 중 일반공산품이 75.8%를 차지하고 있음.⁵⁾

4) 「2021년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전체적인 수입구조에서 차액가맹금 수입은 3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산업통상자원부, 2022.1.).

5) 다만, 필수품목의 경우 주문생산이 64.7%를 차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 공급 물품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부터의 과도한 차액 수취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필수·권장품목 공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우리나라 가맹산업의 계속가맹금⁶⁾ 수취현황을 살펴보면,⁷⁾ 가맹본부의 79.5%가 계속가맹금을 수취⁸⁾하고 있는데, 수취 방법으로 차액가맹금 방식(26.0%), 로열티 방식(28.0%), 차액가맹금과 로열티 방식 병용(25.5%) 방식을 활용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상당수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취 형태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실상 가맹본부의 상품이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마진 수취를 금지하는 것은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6) 상표사용료,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7) 통상 가맹본부의 수입구조는 최초가맹금(가입비·입회비·계약금·할부금·오픈지원비·최초교육비 등), 계속가맹금(차액가맹금, 로열티 등),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8) 계속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10.5%, 무응답 10.0%로 조사됨.

9) 「2023년도 가맹거래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2023.12.27.)

시점마다 모든 물품의 시장 최저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물품 공급 시 과도한 마진을 부과하는 문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¹⁰⁾

10)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가격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동법이 개정('24.1.2.)되었고,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 가맹계약 갱신 거절 시 가맹본부의 입증책임 강화

-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시 거절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u>거절 사유를 적어</u>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거절</u> <u>사유와 그 입증자료를</u> ----- ----- <u>. 이 경우 가</u> <u>맹점사업자의 귀책 등 거절 사</u> <u>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u> <u>책임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등 지급의무 위반 등 가맹계약상의 의무위반이나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¹¹⁾ 이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거절사유 뿐만 아니라 거절사유의 입증자료 또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거절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맹본부에게 있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계약 갱신 거절 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부로 인한 불공정 행위 신고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현행법상 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공정

11)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위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현행법에 규정할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 한편, 안 제13조제3항 후단은 계약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의해서도 갱신거부 사유의 입증책임이 가맹본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3. 가맹계약 최소 기간 2년으로 규정

- ☐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가맹계약기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가맹 최소 계약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통상 2년 이하의 계약기간은 가맹점사업자가 투자금 회수 및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¹²⁾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¹³⁾

12)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까지 평균 3.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13) 참고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최초 가맹계약의 경우 평균 2.2년으로 조사되고 있음(「2023년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맥세스컨설팅, 2023. 4.).

○ 또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에 대한 최소 기간과 임대차 갱신 기간을 각각 1년¹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가 임대 계약기간과 (최초)가맹사업 계약기간이 불일치 하는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 다만, 현행법 제13조제2항¹⁶⁾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최대 10년의 가맹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가맹계약의 최소 기간을 설정하는 실익이 적다고 보이는 점과, 계약기간은 사적 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이므로 최소 기간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¹⁷⁾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15)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음.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16)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7)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